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421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신동욱・유상범・백종헌

안상훈 • 구자근 • 박정하

주진우 · 김소희 · 김 건

이상휘 • 박준태 • 박덕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를 정할 수 있고, 심의대상 정보와 시정요구의 구체적 유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타인을 비방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와 보복성 폭로 콘텐츠 등 정 보통신망에서 불법정보의 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정보 통신망의 특성상 이러한 정보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재생 산되고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시정요구 제도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정보의 범위, 시정요구의 유

형과 시정요구 절차 등에 관한 사항들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시정요구 제도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책임성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신설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의7에 따른 불법정보

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시정요구 등) ① 심의위원회는 제21조제4호에 따른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요구를할 수 있다.

-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요구에 필요한 조치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 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시정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당사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 3.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시정요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시정요구에 따른 의견진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③ 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심의위원장은 제21조제4호에 따른 심의 및 시정요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관 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심의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시정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재조치 및 제21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제재조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 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2.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를 제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	4		
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u>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u> 정보의 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의 및 시정요구	<u>당하는</u>		
<u><신 설></u>	<u>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u>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u>률</u> 」 제44조의7에 따른 불		
	<u>법정보</u>		
<u><신 설></u>	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		
	<u>정되는 정보</u>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21조의2(시정요구 등) ① 심의		
	위원회는 제21조제4호에 따른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 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 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 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 관리·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 <u>차단</u>
-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시정요구에 필요한 조치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 니할 수 있다.
-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

 하여 긴급히 시정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 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당사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 3.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 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시정요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 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시정 요구에 따른 의견진술이 불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 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③ 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당사자 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 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 시판 관리·운영자는 그 조치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생 략)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u>제재</u>
 조치 및 제21조제4호의 시정요
 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심의위원장은 제21조제4호에 따른 심의 및 시정요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심의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가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 보하여야 한다.
- ① 그 밖에 시정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2		 <u>제</u> 재
<u>조</u>	<u>रॅ]</u>	

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 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단서 삭제> 다만, 제21조제4호의 시정요구 를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 니할 수 있다.

-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 〈삭 제〉 하여 긴급히 시정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 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당사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 3.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 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시정요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 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시정 요구에 따른 의견진술이 불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 | <삭 제> 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③ ~ ⑤ (생 략)
- ⑥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

<삭 제>

<삭 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⑦ (생략)

제30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제30조(과태료) ① ------없이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신 설>

<u><</u>신 설>

② (생략)

(7)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자-----</u>

- 1.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2.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 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자료를 제출한 자
- ② (현행과 같음)